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502호 2023년 11월 22일(수)

입법예고

-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6
-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청기간 연장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

-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

나. 출산장려금 신청기간 연장(안 제5조)

-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 6개월 이내로 연장
- 주민등록기간 미도래자는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33-639-2136, FAX 033-639-2590
- 3) 전자문서 : drug110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자치행정과 지역소멸대응팀(033-639-21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90일”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미도래한 사람은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옥외행사와 주최자·주관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속초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 행사에 적용함.(안 제3조)
- 다. 시장은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신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옥외행사 주최·주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함.(안 제6조)
- 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재난대응과 (재난대응팀)
- 2) 연락처 : 전화 033-639-2194, FAX 033-639-2970

3) 전자문서 : jj920727@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 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재난대응과 재난예방팀(033-639-21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속초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연극·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시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벌이는 행사를 말한다.
5.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옥외행사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집행함으로써 최종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7. “후원”이란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8.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단, 단순 기념행사 및 구조물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 행사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속초시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관리·점유 또는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자이거나 주관자인 행사
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옥외행사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자이거나 주관자인 행사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일시·장소
2. 옥외행사 주최자·주관자·후원자
3. 옥외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순간 최대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 등 옥외행사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방지 조치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시행
9. 질서유지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

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수의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제한 또는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때

제9조(질서유지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안전관리 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중단 및 해산 권고)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시 발주 공사의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조례의 용어 개정(안 제2조)

나.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을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이고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규정(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과(건설정책팀)
- 2) 연락처 : 전화 033-639-2753
FAX 033-639-248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과 건설정책팀(033-639-27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2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제4항 중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하도급지킴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강원대금알림e”를 “하도급지킴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0일 이상이고 종합 2억원, 전문 1억원, 기타(용역 등) 8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30일을 초과하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강원대금알림e”를 각각 “하도급지킴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1. (생략)</p> <p>12. “<u>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강원대금지급알림e”라 한다)</u>”이란 <u>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지사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10조(하도급대금 지급 등) ① ~ ③ (생략)</p> <p>④ <u>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지급알림e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보고를 한 것</u></p>	<p>제10조(하도급대금 지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하도급지킴이</u>----- ----- ----- -----.</p>

으로 본다.

⑤ (생략)

제11조(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종합 2억원, 전문 1억원, 기타(용역 등) 8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하도금지킴이의 적용 등)

① ----- 30일을 초과하고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

-----.

1. (현행과 같음)

2 -----
----- 하도금지킴이

② ----- 하도금지킴이의-----

----- 하도금지킴이-----.

원대금알림e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
----- 하도급
지킴이-----

----- 하도급지킴이
-----.